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 변천 과정과 수용 양상

외래어 표기법(1986) 제정 이전의
문교부안과 편수자료를 중심으로

이경숙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국어교육학 전공
gomangy@naver.com

I. 머리말

II. 들은말 적는 법(1948)

III.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IV.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1969)

V.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문자가 유구한 세월을 거쳐 조금씩 다듬어지며 하나의 체계로 모습을 잡아가는 것과 달리 한글은 1443년 겨울에 완결된 모습으로 일시에 출현(이익섭, 1992)하였는데, 이러한 발생학적 특성은 세계의 여타 문자들과 다른, 한글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에서는 새로 만든 문자와 운용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쓴 용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새 문자에 대한 운용법’이 바로 ‘한글 표기법’의 기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국어의 문자 창제 및 표기법의 제정이 모두 관(官)의 주도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 통치라는 시대적 불운을 겪은 시기의 한글 표기법은 국가에서 담당할 수 없었으며, 설령 국가에서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자유 의지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는 일제에 대한 반발로 수많은 민족 단체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글과 그 표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글 표기법의 역사를 논할 때,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와 같은 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지금까지 한글 표기법에 대한 연구는 민간단체의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글 표기법의 통시적 변천을 살피는 데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부에서 고시한 표기법 안이 그것이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어 연구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있어 한글 표기법과 관련한 모든 시안을 담당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의 각 부서 간¹⁾에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표기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은 국어의 4대 규범 중 특히 ‘외래어 표기법’에서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외래어의 특성상 날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과 이로 파생되는 용어로 인해 다수의 외래어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1) 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기 규정이 서로 달랐는데, 1978년 편수국이 처음으로 폐지되고 다시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다가 1996년 최종적으로 편수관 제도가 없어지자(김만곤, 『‘편수관’이라는 이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42-46쪽 참조), 2004년에 협정을 맺어 교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표기를 통일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유학을 간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과학, 의학, 교육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외국어를 임의로 수용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외래어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외래어 표기 실태를 살펴보고, 외래어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논의되어왔다.

신유식(2000), 김수현(2003)의 논의에서처럼 그간 외래어 표기 실태를 다룬 연구는 교과서, 신문, 잡지, 문예문, 사전 등과 같은 문헌 자료를 고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김세중(1990)과 같이 '회사연감'에 수록된 기업 이름을 중심으로 살핀 연구도 존재한다. 또 최근에는 허윤희(2008)와 같이 학위논문이나 구본관(2010)처럼 연구 기관의 보고서 차원에서 외래어 표기에 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외래어 표기 규범과 현실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외래어 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들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외래어 표기의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다룬 논의들과 그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1)과 같다.

(1)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안은 없다 할지라도, 외래어가 어떻게 표기되는지에 대한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면밀히 고찰한다면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참고할 만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외국어가 유입되는 오늘날은 새로운 외래어로서의 자격 여부 및 한글 표기방식은 「외래어 표기법(1986)」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용례들을 검토하여 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외래어의 표기를 심의하여 한글 표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1986년 이전에는 외국어를 포함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일들은 문교부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편수국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편수국은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표기방법을 정하고, 교과별 표기 용례를 제시하여 이를 '편수자료'²⁾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2)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데 용어나 내용을 통일하고, 편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항이나 자료를 정리하여 편수 자료를 편찬해왔다. 먼저, 1959년 9월에 당시 문교부 편수국에서 '제1호'(제1집)가 36쪽의 소책자(4·6배판)로 발간되고, 이후 1977년 12월 제7집까지 계속 이어졌다. 문영주 외, 『교과서 편수자료 1: 편수 일반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PRO-2011-6-2(2011), 1쪽.

(1) 연구자	외래어 표기의 문제점
이상익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음화의 추세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 순음 아래에서 '으'를 모두 '우'로 표기하는 것 • 표준형의 책정이 표기법의 세부 규정에 앞서야 함 • 동양의 한자 문화권 인명·지명은 친숙도나 음절수 등의 기준으로 개개 항목을 사정(査定)할 필요가 있음 • 원어(原語)를 어원 개념과 혼동 없이 밝히되 경로를 추적하여 구별해야 함
김세중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소리 표기 • 관용 인정의 확대
민현식 (1999)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음, 장모음 표기 금지, 7 받침만 허용 • '저, 자, 주, 조처럼 x 뒤에 중모음 표기를 금지한 것 • 'ㄹ'음이 어말에 오는 경우와 자음 앞에 오는 경우를 달리 표기하는 것 • 규정표기와 관용표기의 괴리 •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언급이 없음 • 1항은 불필요 • 용례의 상당수가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에 해당
박종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는 국어인가, 아닌가에 관련된 문제 • 외래어와 외국어를 가르는 기준에 관련된 문제 • 외래어의 표기 원칙에 관련된 문제
이상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음차 표기법」으로서의 위상 • 국가별로 너무 미시적이고 난해함 • 외국어나 외래어가 고유어를 잠식할 수 있음 • 외래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의 문제 •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 • 외래어 및 전문용어, 신조어 등에 대한 관리의 문제

제안한 내용들이 1986년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 상당수 반영되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면서도 쉬운 외래어 표기 규정을 만들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편수국의 노력에 비해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문교부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 규정의 변천 과정과 수용 양상에 대해 문교부 안과 편수자료를 중심⁴⁾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민현식의 『국어 정서법 연구』(태학사, 1999) 390-393쪽에서는 외래어 표기의 문제를 아홉 가지로 제시하였으나 이 중 두 가지(자국음주의에 대한 견해, 홈페이지 관한 안내)는 문제점과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곱 가지만 제시하였다.

4) 외래어 표기의 출발은 외래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삼국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1933년 조선어학회가 발행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외래어 표기 규정을 시작으로 보는데, 조선어학회는 이를 보완하여 1940년에 「외래어 표기법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마련한 이론적인 틀들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

II. 들은말 적는 법(1948)

1. 「들은말 적는 법(1948)」의 제정 과정

정부로서의 첫 번째 외래어 표기법인 「들은말 적는법(1948)」(이하 「들은말(1948)」)은 문교부 ‘학술 용어 제정 위원회’의 제20분과 ‘언어과학 위원회’에서 토의 제정(문교부, 1948)하였다. 비록 정부 안이기는 하나, 이 안은 최현배가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한글갈(1940)」에 내놓은 개인 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들은말(1948)」의 머리 말에는 (2)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⁵⁾ 이 “들은말의 적는 법”은 서기 1982년 에서 1938 년까지의 동안에, 영국, 미국, 포이츨, 프랑스, 로시아, 들의 학자 28 명과 일본인 학자 오륙 명의 우리말 소리와 로오마 자 혹은 소리표와의 비교 연구의 결론을 참조하면서, 한국 사람 뿐 아니라, 미국인 및 본디 로시아인으로써 미국에 입적한 사람. 들 모두 22 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오래 동안 연구 토의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적는 법이 어느 특정한 나라말을 옮겨적음에 당하여 똑바로 맞은 만족의 느낌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똑바로 맞지는 않더라도 멀지는 아니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니, 대개 여러 나라말 소리를 한 가지의 법에 따라, 한글로 옮겨적음에는 이 이상의 객관적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 “적는 법”은 한글 및 소리표의 본바탈(本質)과 역사적 용법과 동서양 수많은 전문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한 것이니, **과학적 참됨(眞理性)과 객관적 딱맞음성(妥當性)**을 가졌다 할 것이다(강조는 필자).

(2)에서 강조한 부분을 통해 「들은말(1948)」의 기본 원칙과 제정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들은말(1948)」은 ‘진리성’과 ‘타당성’이라는 원칙 아래, ‘객관적 정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에 언급된 22인은 ‘정인승, 최승만, 이선근, 김선기, 김재원, 이양하, 현상윤, 김진하, 피천득, 백낙준, 안효삼, 신인식, 박술음, 장익봉, 안호상,

(1986)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안부터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나 이는 기존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학회 안이므로 논의의 대상을 기존 논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정부 안으로 제한한 이 글에서는 이 두 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문교부 안인 「들은말 적는 법(1948)」의 특징을 살필 때, 비교 대상으로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0)」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5)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은 원문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김영근, 최현배, H. G. Underwood, B. B. Weams, (major), C. N. Weams, Jr., Eugene U. Prostav'었는데, 이들은 이보다 앞서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0)」(이하 「통일안(1940)」)에 참여한 위원보다 수적으로 적었으며, 서로 겹치지 않았다.⁶⁾ 이와 같은 구성 인사들의 차이는 두 안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들온말(1948)」은 새로 쓰는 글자를 도입하고 중국, 일본의 인명, 지명을 인위적으로 규제하여 표기하려는 첫 시도를 보였는데, 문교부는 1948년의 안을 교과서에 적용하기 위해 1956년 1월 '외국인명지명표기법'을 작성하였으나 기존의 한글 자모에 없는 'ㅇㅁ, ㅇㅍ'과 같은 글자(이상억, 1979)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워 새로운 외래어 표기법 안을 만들게 되었다.

2.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0)」과의 비교

「들온말(1948)」의 체제는 속판과 붙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3)과 같다.

(3) 속판

머리말

첫째 낱소리의 맞대기

둘째 낱소리 맞대기의 실제스런 맞춰쓰기(適用)

셋째 이 맞대기에 대한 약간의 풀이

I. 새로 쓰는 글자 △, ㅃ, ㅍ, ㄹㄹ

II. 터짐소리의 맞대기: "k=ㄱ, kh=ㅋ, g=ㄱ"의 방식을 취한 까닭

(1) 글자의 역사 및 음운조직으로 보아서

(2) 각국 학자 32인의 연구의 일치함

[붙임]

I. 일본말을 한글로 적는 법(가나의 한글 삼기)

II. 한글을 로마자 자로 적는 법(한글의 로마자 자 삼기)

III. 다른 나라들의 나라, 따, 사람의 이름의 적기

6) 이 중 최현배가 '조선어철자 통일위원회(1930)'의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32년 '김선기'가 추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통일안(1940)」이 4대 규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외래어 표기법인 「들온말(1948)」 제정에 참여한 인원이 결코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

- (1) 다른 나라의 홀로이름씨를 옮겨적기의 원칙
- (2) 따이름에 관련된 지리 술어
- (3) 나라이름, 따이름
- (4) 사람이름
- (5) 중국의 나라이름 따이름
- (6) 중국의 사람이름
- (7) 일본의 따이름
- (8) 일본의 사람이름
- (9) 한 이름 여러가지 부르기

꼬리말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들온말(1948)」의 목차는 「통일안(1940)」과 달랐다. 「통일안(1940)」은 ‘外來語表記法’과 ‘附錄’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외래어 표기법의 1장에서는 ‘總則’을, 2장에서는 ‘細則’을 다루었으며, ‘細則’은 다시 ‘子音에 관한 것, 母音에 관한 것, 特殊한 경우에 관한 것’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附錄’은 다시 ‘國語音 表記法, 朝鮮語音 羅馬字 表記法, 朝鮮語音 萬國音聲記號 表記法’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안(1940)」과 마찬가지로 「들온말(1948)」 역시 자음과 모음의 대조표나 세부적인 해설은 본문에서 제시하였지만, 일본어나 로마자를 적는 부분은 본문과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두 안 간의 유사점을 일부 찾아볼 수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두 체제는 서로 다른 구성을 보였다. 두 안의 성격이 이질적이라는 근거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만뿐만 아니라, 「들온말(1948)」이 ‘터짐소리, 터짐같이소리’라 지칭하는 것과 달리 「통일안(1940)」은 ‘파열음, 파찰음’과 같이 동일한 개념을 달리 지칭하는 용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들온말(1948)」의 첫째 부분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대조 기호, 즉 소리표-한글 맞대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바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통일안(1940)」은 1장에서 총칙을 먼저 제시한 뒤, 자음과 모음의 대조 기호를 제시하였다. 또 소리표-한글 맞대기에 따라 쓴 실제 용례를 둘째 부분에서 따로 제시한 「들온말(1948)」과 달리, 「통일안(1940)」에서는 제1장의 자음과 모음의 대조 기호 옆에表記例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 (4)를 통해 「들온말(1948)」의 닿소리의 맞대기에서는 한 음이 여러 가지 한글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p’는 ‘ㅍ, ㅍ, ㅍ,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0)」		「들온말 적는 법(1948)」	
第1章 總則		첫째 낱소리의 맞대기	
1. 外來語를 한글로表記함에는 原語의 綴字나 語法的 形態의 어더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 두 表音主義로 하되, 現在 使用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만으로써 적는다. 2. 表音은 原語의 發音은 正確히 表示한 萬國音 聲記號를 標準으로 하여, 아래의 對照表에 依하여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 萬國音聲記號와 한글과의 對照表 (萬國音聲學協會 1938年度 修正記號에 依함)		1. 닿소리의 맞대기 소 한 리 표 글 (ㄱ) (ㄴ) (ㄷ) (ㄹ) (ㅁ) P ㅍ ㅑ ㅓ ㅕ ㅗ ㅑ ㅗ ㅓ P ^h ㅑ ㅓ p' ㅑ ㅓ b ㅑ ㅗ ㅓ ㅕ ㅗ ㅑ ㅗ ㅓ ㅕ ㅗ f ㅑ ㅓ β ㅑ ㅓ	
子音			
記號	한글	原音語例	表記例
P	ㅑ	pa'ri(佛Paris)	파리(巴里)
		'episoud(英episode)	에피소드(插話)

ㅑ'의 네 가지 음에 대응된다. 이와 달리 「통일안(1940)」에서는 기호 'p'가 한글 'ㅑ'이라는 글자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통일안(1940)」의 1음(音)1자(字)주의는 「들온말(1948)」의 1자(字)다음(音)주의(유경숙, 1988)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들온말(1948)」의 셋째 부분에서는 맞대기(소리표의 한글삼기)에 대한 풀이를 수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새로 쓰는 글자(Δ, ㅑ, ㅑ, ㅑ)에 대한 소개와 터짐소리의 맞대기에서 'k=ㄱ, kh=ㅋ, g=ㄱ'의 방식을 취한 까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통일안(1940)」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 (5) Δ(=Z). 이 자는 훈민 정음에 있는 글자인데, 옛날부터 조선말에서의 ㅑ의 흐린 소리(곧 z)를 나타내어 적기에 쓰히어 왔다. 이제 이를 살려서 들온말을 적기에 쓰기로 하였다. 만약 Δ을 안 쓰는 경우에는 ㅑ으로 대신한다.
 ㅑ(=v), ㅑ(=f). 이 두 자는 훈민 정음에서 규정한 입술 가벼운 소리(脣輕音)인데, 옛적의 소리값 그대로는 아닐는지 모르지마는, v, f를 나타내기 가장 적당한 것이며, 또 수십 년부터 서양말 적는 이들이 써오는 것이다. 글자꼴도 형편에 따라 ㅑㅑ, ㅑㅑ로 적어도 좋다.
 ㅑㅑ(=l) 이것은 오늘의 배달말에도 많이 쓰히는 소리이니, “걸레, 흘러, 올라”의 말소리가 글자꼴로서는 갈바 썬 ㅑㅑ이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리로서는 완전히 ㅑㅑ(l)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

[잡이] △, ▽, Ⓜ, Ⓝ, 특히 편의스럽게 간단히 나타내어 적고자 할 적에는, 각자의 아래나 위나 옆에 점(.)을 찍어 표하여도 좋다.

(5)에서 새로 쓰는 글자들은 세계적으로 분포한 소리를 최대한 그 나라말에 가깝게 한글로 옮겨 적으려 고심한 결과물이었으나, 이로 인해 「들온말(1948)」이 「통일안(1940)」보다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들온말(1948)」을 「통일안(1940)」과 비교해볼 때, 외래어 표기가 일보 후퇴한 느낌(유경숙, 1988)을 주는 것도 당시에 쓰지 않는 옛글자를 사용하여 표기가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온말(1948)」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5)의 [잡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현실에 적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들온말(1948)」에서는 터짐소리의 맞대기에서 원칙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6) k - ㄱ t - ㄷ p - ㅂ k - ㅋ t - ㅌ p - ㅍ
 (ㄱ) kh - ㅋ th - ㅌ ph - ㅍ (ㄴ) kh - ㅋ th - ㅌ ph - ㅍ
 g - ㄴ d - ㄷ b - ㅂ⁷⁾ g - ㄱ d - ㄷ b - ㅂ

그런데 이제, 이 (ㄴ) 틀을 취하지 아니하고 (ㄱ) 틀을 취한 까닭을 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글자의 역사 및 음운 조직(音韻組織)으로 보아, (ㄱ) 틀을 취함이 바르다. 한글 ㄱ, ㄷ, ㅂ이 맑은소리(淸音)이요, 이에 대하여 ㅋ, ㅌ, ㅍ이 거센소리, 혹은 숨똥소리(激音, 帶氣音, 有氣音)임은 훈민 정음에서부터 역대의 운서(韻書)가 다 한가지로 인정하는 바이며, 또 오늘날의 말소리에 게도 또한 그러함(ㄱ+ㅎ=ㅋ, ㄷ+ㅎ=ㅌ, ㅂ+ㅎ=ㅍ)이 확실하다. ……

(2) 배달말의 소리를 연구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한가지로 (ㄱ) 안을 취하였으니, (ㄱ) 안은 비단 일부의 대한 사람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두루 들어맞는(普遍妥當한) 것이다. 서기 1832년 Ph. Fr. von Siebold 로 비롯하여, 1938년 G. M Mo Cune & E. O. Reischauer에 이르기까지, 배달말 소리를 로마자 자로 맞춘 서양 사람(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외)이 모두 28 인인데, 그중에서 다만 기독교

7) 「들온말(1948)」은 ‘한글을 로마자 자 삼기(Romanization)’와 ‘로마자 자를 한글 삼는 경우(Koreanization)’의 예로 들며 (ㄴ)이 타당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특히 “첫소리의 g는 확실히 ㄱ에 가장 가까운 것인데, g에다가 맑은소리 ㄱ으로 맞대고 보니, ㄱ에 맞닿 만한 소리는 전연 없게 된다. 이는 다만 우리에게 남는 소리라 하면 말은 되겠지마는,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언급을 통해 유성자음을 경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선교 초기에 중국 만주에서 선교하면서 배달말을 배운 로스와 맥 인타이어(Ross, Mac Intyre) 두 사람만이 위의 (ㄴ) 안을 취하였고, 그 나머지 26인은 다 (ㄱ) 안을 취하였다. ……

(6)의 (1)에서는 파열음의 역사적인 쓰임을, (2)에서는 한글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음성학적인 인식을 근거로 (ㄴ)이 아닌 (ㄱ)을 채택하는 것이 올바름을 주장한다. 그러나 「통일안(1940)」에서는 ‘kant(獨Kant) 칸트, kho(소말릴란드語) 코(家), geim(英game) 게임(競技)과 같이 (ㄴ)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들온말(1948)」은 “말소리는 과학스런 인식의 대상(對象)인즉, 그 인식의 결과는 두루맞맞음(普遍妥當性)을 가지는 것이요, 결코 한 사람 한 민족의 주관적 독단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과학, 특히 소리같이 소속되는 자연 과학의 요구”라 전제하며 “한국 사람, 특히 소리에 대한 과학스런 훈련이 없는, 또는 잘못 배운 중학생 정도의 사람들이 선입의 관념에 따라 (ㄴ)과 같이 ‘ㄱ-g, ㅋ-K’로 하고서 ‘Sky-스카이, Stalin-스타알린, Boston-보스톤’이라 하는 것은 과학적 두루맞맞음이 없는, 단순한 주관적 감정적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 더구나 그 나라의 소리갈 학자에게 다져 보면 반드시 (ㄱ)과 같이 ‘Sky-스카이, Stalin-스따알린, Boston-뽁스뽁’으로 되어, 그 객관적 정체가 단박에 밝아질 것”이라 덧붙였다. 이처럼 파열음 표기에 (ㄴ) 대신 (ㄱ)을 채택하여 어두에 된소리가 오는 것을 허용한 「들온말(1948)」은 말소리의 ‘보편타당성’이라는 원칙 아래, 외래어를 최대한 원음(原音)에 가깝게 한글로 전사하는 노력을 집대성한 산물이었다.⁸⁾

8) 그러나 「들온말(1948)」에 대해 「통일안(1940)」이 해방 후 정착될 기회를 잇아가 버렸을 뿐더러, 공연히 최현배 案의 亞流를 이루었다가 교과서에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는 논의도 있다. 이상익, 『국어 표기 4법 논의: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화』(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91-92쪽.

Ⅲ.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1.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의 특징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이하 「한글화 표기법(1958)」)은 ‘국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58년 10월 20일에 문교부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공표한 두 번째 외래어 표기법이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외래어 표기를 로마자의 한글화로 인식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표기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통일안(1940)」을 계승(강희숙, 2010)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글화 표기법(1958)」에서 제시한 표기의 기본 원칙은 (7)과 같다.

- (7) 1. 외래어(로마자)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에 따른 현용 24자모를 쓴다.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한다. 곧 이음(異音, allophone)이 여럿이 있을 경우라도 주음(主音, principal member)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받침은 파열음에서는 “ㅂ, ㅅ, ㅈ”, 비음(鼻音)에서는 “ㅁ, ㄴ, ㅇ”, 유음(流音)에서는 “ㄹ”만을 쓴다.
4. 영어, 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
5.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7)에서 1항은 「통일안(1940)」의 첫 번째 總則의 “現在 使用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만으로써 적는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나머지 조항들은 「한글화 표기법(1958)」에서 처음 제시된 것인데, 이 중 2항, 3항, 5항은 그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도 유지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4항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 영국식만 표준 발음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이 조항은 「한글화 표기법(1958)」에서만 나타나고 후에 소멸되었다.

그러나 「한글화 표기법(1958)」은 외래어 표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강희숙, 2010), 많은 허용 사항이 있어 실제로 표기할 때는 약간의 곤란을 초래하므로 표기 원칙의 허용 사항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기방법을 정하여 세칙을 마련하였다(문교부, 1960). 「한글화 표기법(1958)」을 수정·보완하는 성

격을 지닌 이 세칙은 문교부 편수국에서 정하였으며, 1959년에서 1963년 사이에 편수자료(제1호-제4호)로 발행⁹⁾하여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에 적용하였다.

편수자료 1호(1959. 9)는 「한글화 표기법(1958)」을 토대로 교과서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정하고, 이에 의한 국정 교과서 외래어 일람표를 과목별로 제시하였다. 편수자료 2호(1960. 4)는 약 3,000개 정도의 외국 지명의 한글 표기를 「한글화 표기법(1958)」에 따라 통일하였다.

‘한글 맞춤법에 관하여,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한글 표기 세칙, 교과용 도서 체재 기준안, 중국 한글 표기 원칙’이라는 목차로 구성된 편수자료 3호(1960. 11)는 1호의 보완(임동훈, 1996)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의 표기 세칙과 중국음 한글화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편수자료 4호(1963. 7)는 2호의 보완(이승구, 2000)으로, 사회과 인명, 지명 표기로 역사 인명 표기법과 지명 표기법을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각 편수자료에서 「한글화 표기법(1958)」의 세칙이 어떻게 마련되고, 점차 수정·보완되었는지 용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편수자료에서의 수용

1) 편수자료 1호

편수자료 1호는 「한글화 표기법(1958)」에 의거하여 전(全)학년용과 1·2기용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를 개정하였는데, 교과서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제시하면 (8)과 같다.

(8) 1.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 의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9) 편수자료는 4호 이후, 1977년 7호까지 계속 발행되었다. 편수자료 5호(1964. 5)는 학교 문법 및 국사 교육내용의 통일, 수학, 물리, 화학 용어의 개정과 통일을 실었고, 편수자료 6호(1972. 2)는 지학과 자료 및 용어를 실었다. 이 편수자료 발행은 그 후에도 이어져 음악, 미술, 체육 용어를 실은 7호를 만들다가 소위 검인정 파동으로 무산되고, 당초 8호로 만들려던 외래어 표기 용례집(20,000 용례)을 7호(1977. 12)로 바꾸어 공판 인쇄를 해 사용하게 되었다(이승구, 「표기 자료의 개발」, 『編修의 뒤안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0, 165쪽 참조). 그러나 편수자료 5호부터는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주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외래어 표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편수자료 1호에서 4호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미어와 영어 발음이 구별될 때는 미어를 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영미 이외의 말로서 그 어원과 발음이 뚜렷할 때는 그 나라 말로 적었다.
4. 마찰음 ʒ가 초성일 때는 ‘자저쵸쥬’로 적는다.
5. 파찰음 ʃ(치), ʒ(지)가 초성일 때는 ㅈ, ㅉ로 적었다.
6. 비음 ŋ(ㅇ)이 모음 앞에 있을 때는 ㄱ을 더했다.
7. 이미 관용된 말은 그것을 택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였다.

(ㄱ) 파열자음(p, t, k, b, d, g)이 단모음(短母音) 뒤에 올 때는 받침으로 적었다.

단 한 음절로 된 말 중 말음이 b, d, g, t일 때는 “으”를 붙여 적었다.

보기: [kʌp]컵, [buk]북, [bæɪt]베트, [eg]에그, 파열자음이라도 모음(장모음, 중모음) 뒤에 올 때는 ‘으’를 붙여 적었다. 보기: [ki:p]키이프, [meik]메이크

(ㄴ) w는 원글이 wo 때에는 ‘워’로, wa 때에는 ‘와’로 적었다.

(ㄷ) 도이치 말에서

e의 발음표가 ə일 때도 ‘에’로 적었다.

z의 발음표가 ʒ일 때 ‘ㅈ’로 적었다.

(8)의 1, 3, 5, 7의 내용은 「한글화 표기법(1958)」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8)의 “2. 미어와 영어 발음이 구별될 때는 미어를 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내용은 「한글화 표기법(1958)」의 4항 “영어, 미어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는 조항에서 나아가, ‘미어를 택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글화 표기법(1958)」의 자음 6항 “파찰음 ʃ(치), ʒ(지)가 모음 앞에 있을 때는 ㅈ, ㅉ로 적을 수 있다”는 조항은 (8)의 “5. 파찰음 ʃ(치), ʒ(지)가 초성일 때는 ㅈ, ㅉ로 적었다”와 같이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8)의 “6. 비음 ŋ(ㅇ)이 모음 앞에 있을 때는 ㄱ을 더했다”와 같이 「한글화 표기법(1958)」에 없던 내용이 제시된 것도 편수자료 1호가 지닌 세칙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9)는 편수자료 1호의 「한글화 표기법(1958)」에 의한 국정 교과서 외래어 일람표 중 국어과(1기용)¹⁰⁾에 해당하는 용례 가운데, 구 표기(「통일안(1940)」)와 새 표기(「한글화 표기법(1958)」)가 다른 외래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현행 표기(「외래어 표기법(1986)」)에 따라 쓴 것을 제시하였다.

10) 편수자료 1호에서는 국어과, 산수과, 사회생활과, 자연과, 음악과, 미술과, 실과 교과서의 국민학교 전(全)학년용과 1·2기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를 「한글화 표기법(1958)」에 의해 적은 용례를 제시했다.

(9)

구 표기(1940)	새 표기(1958)	현행 표기(1988)	원어
노벨	노오벨	노벨	Nobel[noubel]
노트	노우트	노트	note[nout]
뉴스	닉우스	뉴스	news[nju:z]
넬로	네로	네로	Nero[ni:rou]
다윈	다아윈	다윈	Darwin[da:win]
다리아	다알리아	달리아	dahlia[da:lja]
다이내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마이트	Dynamite[dainə'mait]
덴마크	덴마아크	덴마크	Denmark[denma:k]
드람	드램	드램	dram[dræm]
라이부치히	라이프찌히	라이프치히	Leipzig[laiptsic]
레코드	레코우드	레코드	record[rekɔ:d]
루스벨트	루우스벨트	루스벨트	Roosevelt[rouzəvelt]
레시버	리시이버	리시버	receiver[risi:və]
벨기	벨기에	벨기에	Belgium[beldʒiəm]
볼틱	보올트	볼트	Bolt(ic)[bɔ:lt(ik)]
슈베르트	슈우베르트	슈베르트	Schubert[ʃu:bərt]
스코틀랜드	스코틀란드	스코틀랜드	Scotland[skɔ:tlənd]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strike[stらいk]
스네마 스코프	시네마 스코우프	시네마 스코프	cinema - scope[sinimə - skoup]
시로폰	실로폰	실로폰	xylophone[zailəfoun]
아이스케키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	ice - cake[aɪskəɪk]
안델센	안데르센	안데르센	Andersen[ændəsən]
안트워프	앵트워이프	앵트워프	Antwerp[æntwə:p]
알프레드 노벨	알프렛 노오벨	알프레드 노벨	Alfred - nobel[ælfred - noubel]
아나운서	어나운서	아나운서	announcer[ənaunsə]
유엔	유우엔	유엔	U.N[ju:en]
이속	이이속	이속	Aesop[i:sə:p]
인디언 죠	인디언 조우	인디언 조	Indian - Joe[indiəndʒou]
장 후랑수아	장 프랑수아	장 프랑수아	Jean - francois[ʒɛfrɑswa]
조지	조오지	조지	George[dʒɔ:dʒ]
처칠	처어칠	처칠	Churchill[tʃə:tʃil]
콜시카	코르시카	코르시카	Corsica[kɔ:sikə]
코리아	코리아이어	코리아	Korea[kori:ə]
크로버	클러버	클로버	clover[klɔuvə]
탱크	탱크	탱크	tank[tæŋk]
톰 소야	톰 소오여	톰 소여	Tom - sawyer[tomsɔ:jə]
파블	파아브르	파브르	Fabre[fa:br]
프로듀서	프라듀우서	프로듀서	producer[prɔdju:sə]
프레데릭	프레더릭	프레더릭	Frederick[fredɜrik]
프로그램	프로그래	프로그램	program[prougɾæm]
프로펠라	프로펠러	프로펠러	propeller[prəpelə]

국어과(1기용)에 제시된 외래어는 총 93개인데 (9)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구 표기와 새 표기가 다른 외래어는 모두 41개로 나타났다. (9)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 표기와 새 표기는 동일하지만 현행 표기와 다른 외래어(유틀란트, 윌슨, 타입, 페스탈로치)도 네 가지(유틀란트, 윌슨, 타입, 페스탈로찌)가 나타났다.

(9)에서 구 표기와 새 표기가 다른 외래어는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던 구 표기와 달리, 새 표기에서는 같은 모음을 거듭 적어 장음을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외래어는 ‘닉우스, 다아윈, 다알리아, 덴마마크, 레코오드, 리시이버, 보올트, 슈우베르트, 앤트위이프, 유우엔, 이이숍, 조오지, 처어칠, 코리이이어, 톱 소오여, 파아브르, 프로듀우서’ 등으로 (8)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원음(原音)에 충실한 외국어와 달리, 외래어 표기는 보편적인 우리말의 발음으로 국음화(國音化)¹¹⁾된 것을 대상으로 적어야 하므로, 우리말에 없는 이러한 장음 표기는 할 것이 아니다(김민수, 1973: 128). 따라서 현행 표기에서 장음 표기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은 외래어의 본질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절한 조치이다.

둘째, 이중모음 [ou]를 ‘오우’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외래어는 ‘노오벨, 스코우프, 노우트, 인디언 조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 발음을 고려한다면 구 표기나 현행 표기에서처럼 ‘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셋째, 파열음이 말음일 때는 ‘으’를 붙여 적는 것이다. 구 표기에서 ‘덴막, 스트라이크’와 같이 받침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새 표기에서는 ‘덴마마크, 스트라이크’와 같이 ‘으’를 붙여 적었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 표기에서도 이어져 어말에서의 파열음에 여전히 ‘으’를 붙여 적는다.

이 외에 구 표기에서 ‘라이부지히라’ 표기한 것을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사용해 새 표기 ‘라이프찌히라’ 표기한 것과 구 표기에서 관용을 수용해 국음화(國音化)하여 ‘아나운서’라 표기한 것을 새 표기에서 ‘어나운서’로

11) 과거에 외래어 표기법을 놓고 크게 대립되었던 두 원칙은 외래어를 그 원래 사용지역의 언어음으로 적을 것이냐, 우리 국어에 수용되어 통속화된 국어식 발음으로 적을 것이냐는 두 입장인 原音主義 대 俗音主義로(이상익, 『국어 표기 4법 논의: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85쪽 참조), 이 글에서는 김민수(1973)를 따라 이후에 펼쳐지는 논의는 원어의 발음에 충실한 표기를 原音 표기로, 우리나라에서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음을 다수 허용한 표기를 國音 표기로 지칭하겠다.

표기한 것은 비록 현행 표기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새 표기를 통해 원음(原音)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2) 편수자료 2호

편수자료 2호에서는 「한글화 표기법(1958)」에 의한 외국 지명 한글 표기에 관하여 수록하였다. 먼저 외국 지명 한글 표기 제정에 관한 원칙을 ‘알아두기’로 자세히 제시하고, 약어 풀이 및 기준으로 삼고 있는 Webster 지명 사전표음(W.P.A) 기호와 만국 표준 표음(I.P.A)과의 대조표를 범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명과 서울명¹²⁾, 미 50 주명, 중국 성명(省名), 중국 지명, 중국(북부 지방), 중국(중남부 지방), 타이완, 중국(만주 지방), 일본 지명 순으로 수록하였다. 이 중에서 국명과 서울명을 살펴보면 (10)과 같다. (10)에서는 ‘실론 → 스리랑카공화국’과 같이 국명이 변하거나, ‘이로테자네이로(현행 표기: 리우테자이네루) → 브라질리아’와 같이 서울명이 변한 것은 다루지 않고, 표기가 변한 것만 살펴보았다.

(10)의 편수자료 2호에 나타난 국명과 서울명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과 다른 것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음을 표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외래어는 ‘랑구운, 터어키, 그리스, 파아두츠, 튜우니스, 카메룬’ 등이 있다. 또 이중모음 [ou]를 ‘오우’로 표기한 ‘포오토우프링스, 프리도우리아’ 등과 같은 외래어도 나타난다. 그리고 ‘난쟁’과 같이 오늘날 외래어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 된소리도 나타난다. 그러나 편수자료 2호에서 [w]는 이에 해당하는 한글 표기가 없어 ‘와싱턴’과 같이 원어의 철자에 따라 ‘wa’를 ‘와’로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이공’을 ‘사이곤’으로, ‘앙카라’를 ‘안카라’로 표기한 것을 보면 당시 편수자료 2호의 지명 표기는 현행 표기(1986)가 관용 발음을 존중하여 국음(國音)으로 표기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음(原音)의 발음을 충실히 표기한 특징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서울명’이란 수도(首都)를 의미한다.

(10)

편수자료 2호(1959)		현행 표기(1986)	
국명	서울명	국명	서울명
일본	토오쿄오	일본	도쿄(동경)
중국	난쟁(타이베이)	중국	난징
몽고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사이곤	베트남	사이공
라오스	보엣안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일란드	방콕	태(랜드)	방콕
말라야	콰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어마	랑구운	미얀마	랑군
터어키	안카라	터키	앙카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헤이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아이슬란드	레이카비익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리히텐슈타인	파아두츠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폴란드	와르샤와	폴란드	바르샤바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미국	와싱턴	미국	워싱턴
멕시코우	멕시코우 시티	멕시코	멕시코시티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코스타리카	상호세이	코스타리카	산호세
아이티	포오투우프랑스	아이티	포르투프랑스
베네스웰라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아르헨티나	부웨이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파라과이	아순손	파라과이	아순시온
브라질	이로데자네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베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튀니지아	튀우니스	튀니지	튀니스
기니아	코나크리	기니	코나크리
남아프리카연방	프리트우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소말리란드	모가디시오	소말리아	모가디슈
카메루운	아운데	카메룬	야운데
뉴지일란드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턴

* 음영 처리한 것은 편수자료 2집(1959)의 표기가 현행 표기(1986)에서 변한 것이다.

3) 편수자료 3호

편수자료 3호의 차례는 총 10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한 내용은 '4. 로마자 한글 표기 세칙, 5. 많이 쓰는 외래어, 10. 중국 지명 한글 표기의 원칙'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4. 로마자 한글 표기 세칙'에서는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의 표기방법을 수록하였다. 영어는 자음, 모음, 반모음의 한글 대조표를 제시하고, 7개 항목으로 제시된 표기방법을 '보기'를 들어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은 소략하게 제시하였다. '5. 많이 쓰는 외래어'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말 중 표기가 비교적 어려운 외래어를 추려 제시하였는데, 이 중 현행 표기와 다른 용례를 제시하면 (11)과 같다.

(11)을 보면, 앞서 '4. 로마자 한글 표기 세칙'의 '영어'의 모음 표기에서 "장모음은 같은 모음을 거듭 적기로 하되 안 적을 수도 있다"고 정한 것과 달리 '아메에바, 아파아트, 오오토바이, 보울, 바이에르, 블랙보오드, 바이에르, 블랙보오드, 블루우스, 보우트, 카아드, 카아네이션, 치즈즈, 각테일 파아티, 콘크리트, 코오넷, 커어튼, 도우넛, 플랫폼옴, 플루우트, 굿모닝, 기타아, 하아모니커, 핵타아르, 휴우머, 마아거리이트, 모르스, 모우터, 노오드, 오우트미일, 피이터, 플라카아드, 포우즈, 로올러, 로우즈, 산타클로스, 스크루우, 쇼울, 셔어츠, 쇼우윈도우, 스키이, 슬오우건, 소오다, 스푸운, 테에마, 튜우브, 튜울립, 워어크'와 같이 모두 장모음¹³⁾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딜렘마'에서처럼 중자음¹⁴⁾을 나타내어 표기한 것도 찾아볼 수 있으나, '러닝'에서처럼 중자음이 나타나지 않은 예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이아쥘'과 같은 관용어나 '짱 프랑스와'와 같이 프랑스어에서 된소리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도 있으며, '쿠오오터'처럼 파열음 뒤에 오는 반모음 w는 '우오'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어코오디언, 사이더, 클라식'과 같은 외래어를 통해 관용을 허용한 국음 표기보다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택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3) '베에토오벤, 괴에테'는 독일어에서, '드 고울, 르느와아르'는 프랑스어에서 장모음을 표기한 것이다.

14) 이때의 '중자음'이란 중복되는 자음을 뜻한다.

(11)

원어	편수자료 3호 (1960)	현행 표기 (1986)	원어	편수자료 3호 (1960)	현행 표기 (1986)
accordion	어코오디언	아코디언	marguerite	마아커리이트	마거리트
alcohol	알코홀	알코올	minuet	미뉴에르	미뉴에트
amoeba	아메에바	아메바	Mohammed	모하멧	모하메드
apartment	아파아트 (멘트)	아파트	Morse	모르스	모스
asparagus	아스파라기스	아스파라거스	motor	모우터	모터
auto - bike	오오토바이	오토바이	naphthaline	나프탈린	나프탈렌
Bach	바하	바흐	north	노오드	노스
ball	보올	볼	oatmeal	오우트미일	오토밀
Beethoven	베에토오벤	베토벤	octave	옥타아브	옥타브
beyer	바이에르	바이어	over coat	오우버 코우트	오버 코트
blackboard	블랙보오드	블랙보드	pedal	페달	페달
blues	블루우스	블루스	Peter	피이터(페트로)	피터
boat	보우트	보트	placard	플라카아드	플래카드
card	카아드	카드	poplar	포플라	포플러
carnation	카아네이션	카네이션	pose	포우즈	포즈
cheese	치이즈	치즈	production	프러덕션	프로덕션
cider	사아더	사이다	pyramid	피라미트	피라미드
classic	클라식	클래식	quarter	쿠오우터	쿼터
cocktail party	카크테일 파아티	카크테일 파티	queen	퀸	퀸
columbus	컬럼버스	콜럼버스	Renoir	르느와아르	르느와르
concrete	콘크리이트	콘크리트	Rodin	로당	로댕
cornet	코오넷	코넷	roller	로올러	롤러
curtain	커어튼	커튼	rose	로우즈	로즈
De Gaulle	드 고울	드골	rosetta	로세타	로제타
dessin	데상	데생	running	러닝	런닝
diazin	다이아진	다이아진	Santa Claus	산타클로오스	산타클로스
dilemma	딜렘마	딜레마	screw	스크루우	스크루
doughnut	도우넛	도넛	serenade	세레나드	세레나데
Elisabeth	엘리자베드	엘리자베트	shawl	쇼올	숄
flatform	플랫포움	플랫폼	shirts	셔어츠	셔츠
frute	플루우트	플루트	show window	쇼우윈도우	쇼윈도
gallon	갈론	갤런	ski	스키이	스키
Gauguin	고강	고갱	skirt	스커어트	스커트
Goethe	괴에테	괴테	slogan	슬로우건	슬로건
Gogh	고호	고흐	soda	소오다	소다
good-morning	굿모오닝	굿모닝	spoon	스푸운	스푼
guitar	기타아	기타	stop watch	스톱와치	스톱워치
harmonica	하이모니커	하모니카	Strauss	스트라우스	슈트라우스
hectare	헥타아르	헥타르	theme	테에마	테마
Hesse	헤세	헤세	tube	튜우브	튜브
humour	휴우머	유머	tungsten	팅스텐	텅스텐
Jean Francois	장 프랑스와	장 프랑수아	tulip	튜울립	튤립
leghorn	렉호온	레그혼	work	워어크	워크

한편, ‘10. 중국 지명 한글 표기의 원칙’은 일부 학자 측에서 지적한 주음부호(注音符號)를 단일화하지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원칙을 변경(문교부, 1960)한 것이다.

(12) 中國 原音を 한글로 標記하는 原則을 세우는 基準으로는 역시 注音符號를 들 수밖에 없다. 이는 中國(台灣, 香港)에서 發行되는 各種 辭典은 勿論 日本에서 發行하는 各種 華日辭典도 一般이 쉬이 入手할 수 있을 程度로 國內 書店에서 取扱하고 있기 때문이다.

實地로, 注音符號를 한글 標記化하는 데는 다음 몇 가지 重要的 問題가 생긴다.

1. 四聲에 따라 聲價(字音)가 달라지는데(2聲, 3聲은 軟聲, 1聲, 4聲은 硬聲), 이를 區別하여야 하나?
2. 捲舌音의 表示를 어떻게 하나?
3. 母音 ㄨ의 四聲別 區別 標記如何?
4. 母音 ㄨ 및 ㄨ에 있어서의 附樹子音에 따르는 音價 差異를 區別標記하나?

(12)를 통해 편수자료 3호에서 중국 주음부호의 한글 표기 원칙을 만들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음을 로마자화하는 데는 수십 종의 양식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적당치 못하고, 그러한 문헌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문교부, 1960)에 주음부호의 한글 표기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음 한글화 원칙은 (12)에 제시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하여, 자음과 모음에서의 주음부호와 표기 원칙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 중 자음의 주음부호와 표기 원칙만 제시하면 (13)과 같다.

(13)

<p>I. 子音</p> <p>ㄱ=ㄱ ㄴ=ㄴ ㄷ=ㄷ ㄹ=ㄹ</p> <p>ㅋ=ㄱ ㆁ=ㄴ ㆁ=ㄴ ㆁ=ㄴ</p> <p>ㄲ=ㄱ ㆁ=ㄴ ㆁ=ㄴ</p> <p>ㄴ=ㄴ(1, 위) ㄷ=ㄷ(1, 위) ㄹ=ㄹ(1, 위)</p> <p>ㅅ=ㅅ ㅈ=ㅈ ㅊ=ㅊ ㅌ=ㅌ</p> <p>ㅍ=ㅍ ㅍ=ㅍ ㅍ=ㅍ</p>
<p>原則: (1) 一字 一音의 簡便化 原則에 依하여 一·四聲과 二·三聲의 硬聲 및 軟聲의 區別表記를 하지 않고 上記와 같이 單一化한다.</p> <p>(2) 한글의 字母로는 捲舌音을 區別할 수 없어서 이에 對한 全般의 別途措置를 하지 않으되, ㅍ 및 ㅅ의 捲舌音은 ㅅ, ㅈ로, 平舌音 ㅍ, ㅌ 는 ㅍ, ㅌ로 區別한다.</p>

(13)의 자음 표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평설음(ㄹ, ʔ)을 ㅍ, ㅑ로 표기하고, 권설음(ㄴ, ㅍ)은 ㄴ, ㅑ으로 표기한다는 것인데, 이 외에는 권설음의 구별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 1자 1음의 간편화 원칙에 따라 사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내용은 모음의 표기 원칙 “4. 母音 又의 四聲別 區別標記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의 질문 4에 대한 대답으로, 모음 ㄴᄃ 및 ㄴᄂ는 1자 1음의 간편화 원칙에 따라 부수자음에 의한 음표변화는 구별하지 않는다¹⁵⁾고 하였다.

(14)는 편수자료 3호에서 제시한 ‘중국어 한글화 원칙’을 적용한 중국 성명, 중국 주요 지명, 만주 지방, 북부 지방의 표기 용례 가운데, ‘중국 주요 지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표기(1986)와 다른 외래어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현행 표기에서 ‘진저우, 만저우리, 쑤저우, 란저우, 푸저우, 하이저우, 항저우, 쉬저우, 정저우, 충저우’로 표기하는 것을 (13)에서는 ‘진조우, 만조우리, 쑤조우, 란조우, 푸조우, 하이조우, 항조우, 쉬조우, 정조우, 충조우’로 표기한 것이다. 편수자료 3호는 중국음 한글화 원칙에서 주음부호를 따라 ‘쑤’의 운모인 又를 ‘우’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표기의 제2장 표기 일람표 중 중국어의 주음부호는 한어병음자모 및 웨이드식 로마자에 의해 ‘쑤’의 운모 ou(又)를 ‘어우’로 표기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둘째, (14)에서는 ‘통장, 자무쓰, 무판장, 장자코우’와 같은 표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자’와 ‘쟈’, ‘조’와 ‘죠’가 국어의 발음에서 구별되지 않아, 현행 표기의 제3장 표기 세칙 중국어의 제2항 “ㄴ, ㅍ, ㄷ”으로 표기되는 자음 뒤의 ‘ㄲ, ㅋ, ㆁ, ㅍ’ 음은 ‘ㄴ, ㅋ, ㆁ, ㅍ’로 적는다”는 규정에 의해 바뀌었다.

셋째, 현행 표기에서 ‘자무쓰, 쑤저우’와 같이 평설음의 표기를 위해 된소리 중 ‘ㅍ, ㅑ’를 쓰는 것 외에 다른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 것과 달리, (13)에서는 ‘할뽀, 빠오투우, 꺽뽀, 꾸이린, 뽀이핑, 안뽀, 닝뽀, 따예, 꾸이양, 타이뽀이, 까오슝’과 같이 ‘ㄴ, ㄷ, ㅍ’과 같은 된소리 표기도 나타난다.

15) “다만 모음만의 경우에 한하여 모음 주음부호표에 의해 예외표기를 한다”는 내용이 중국음 한글화 원칙 (5)에 제시되어 있다.

(14)

지명	편수자료 3호(1960)	현행 표기(1986)
同江	통장	통장
佳木斯	자무쓰	자무쓰
牡丹江	무단장	무단장
延吉	연지	연제/연길
吉林	지린	지린/길림
哈爾濱	할빈	하얼빈
齊齊哈爾	치치할	치치하얼
錦州	진조우	진저우
滿洲裏	만조우리	만저우리
張家口	장자코우	장자커우
包頭	빠오투우	바오터우
庫倫	쿠룬	고룬
肅州	쑤조우	쑤저우
成都	청두	청두
蘭州	란조우	란저우
福州	푸조우	푸저우
淸門	아모이	샤먼
汕頭	산투우	산터우
廣東(廣州)	광둥(광조우)	광둥(광저우)
龍州	룽조우	용주
桂林	꾸이린	꾸이린
大同	따통	다통
北平	베이핑	베이징/북경
大連	따렌	다렌
安東	안둥	안둥
青島	칭다오	칭다오
海州	하이조우	하이저우
上海	상하이	상해
杭州	항조우	항저우
寧波	닝뽀	닝보
大冶	따예	다예
漢口	한코우	한커우
徐州	쑤조우	쑤저우
鄭州	정조우	정저우
石家莊	스자좡	스좡
貴陽	꾸이양	꾸이양
琿州	충조우	충저우
台北	타이베이	타이베이
高雄	카오슝	가오슝

4) 편수자료 4호

편수자료 4호는 인명, 지명의 표기를 다루었는데, 1.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2.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 일람표, 3. 웨스턴 발음 기호 대조표, 4. 주음부호의 한글화 표기 일람표, 5. 카나의 한글화 표기 일람표, 6. 범례, 7. 서양 관계 인명 표기 일람, 9. 역사 지명 표기 일람, 10. 역사 용어 표기 일람, 11. 외국 지명 표기 일람, 12. 공산권의 지도 내용'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은 크게 (1) 서양 관계와 (2) 동양 관계로 나누어지는데, (2) 동양 관계 중 중국 인명 표기와 관련하여 제시한 표기 원칙에는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주음부호의 한글화 표기법에 의하여 중국음으로 표기하고 한자의 주를 단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5)는 '8. 동양 관계 인명 표기 일람' 중 (1) 중국 관계 인명에서 현행 표기(1986)와 차이를 보이는 외래어 용례만 제시한 것이다. 편수자료 4호 '1.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에 제시된 중국 인명 표기의 방법을 따르면 (15)에 제시된 인명은 모두 과거인이므로 한국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인명	편수자료 4호(1963)	현행 표기(1986)	비고
	毛澤東	마오쩌둥	마오쩌둥/모택둥	1893-
	王世傑	왕스제	왕스제	1891-
	左宗棠	쥬쥬탕	좌종탕	1821-1885
	西太後	시태후	서태후	1835-1908
	朱德	주더	주더	1886-
	光緒帝	광수제	광서제	1871-1908
	林則徐	린쩌쉬	임척서	1785-1850
	胡志明	후즈밍	호찌민	1891-
	洪秀全	홍쑤취안	홍수전	1813-1864
	孫文	쑤원	쑤원/손문	1866-1925
	郭沫若	궈모뤄	궈모뤄	1891-
	張學良	장샤오량	장쉐량	1898-1950
	曾國藩	청궈판	증국번	1811-1872
	達摩	다르마(보디)	달마	
	醇親王	춘친왕	순친왕	1877-
	劉少奇	류샤오지	류샤오치/유소기	1905-
	蔣介石	장제스	장제스/장개석	1887-

그러나 (15)의 편수자료 4호에서 한국식 한자음을 따르는 인명은 하나도 없다. ‘시대후’의 ‘태후’ 정도에서만 한국식 한자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西’를 한국식 한자음인 ‘서’가 아닌 중국 원음인 ‘시로’ 표현하였다. ‘왕스제, 청궐관, 다르마, 류사오지’과 같이 중국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용례들은 모두 중국 원음대로 발음한 표기임을 알 수 있다.

IV.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1969)

1.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1969)」의 내용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1969)」(이하 「한글 표기법(1969)」)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1969년 5월 23일에 문교부 한글전용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의 세 번째 외래어표기법안(문교부, 1969)이나 「들은말(1948)」과 마찬가지로 공표되어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문교부 회의 자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 표기법(1969)」이 당시 외래어 표기법으로 시행되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9)」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글 표기법(1969)」은 ‘I.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 원칙, II. 영·독·프랑스어의 음운 표기 일람표, III. 표기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표기법(1969)」의 1장에서 원칙을 다룬 것은 다른 안들과 동일하나, 표기 세칙을 2장에 제시하는 다른 안들과 달리 3장에 제시한 것이 차이점이다.

- (16) 1. 외래어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에 다른 현용 24자모만을 쓴다.
2. 외래어는 그 나라 표준어 음운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옮겨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운 조직 표기는 국제 음성 기호로 한다.
3. 외래어의 한 음운에 변이음이 여럿이 있을 경우라도 주음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받침은
 티점소리(파열음)에서는 ㅂ, ㅅ, ㄱ
 콧소리(비음)에서는 ㅁ, ㄴ, ㅇ

흐름소리(유음)에서는 ㄹ의
일곱 자모만을 쓴다.

5.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밑줄은 필자).

(16)에서 보다시피, 「한글 표기법(1969)」 표기 원칙은 용어나 기술에서의 세부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한글화 표기법(1959)」의 표기 원칙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한글화 표기법(1959)」의 4항에서 “영어, 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고 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한글 표기법(1969)」은 2항 “외래어는 그 나라 표준어 음운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옮겨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운 조직 표기는 국제 음성 기호로 한다”는 내용은 「통일안(1940)」에서 제시한 2항 “表音은 原語의 發音을 正確히 表示한 萬國 音聲 記號를 標準으로 하여, 아래의 對照表에 依하여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는 내용을 수용하여 보다 정제된 표현으로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은 개정된 「한글 표기법(1969)」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인데, 뒤이어 나타나는 2장에서 영·독·프랑스어의 음운 표기 일람표가 바로 제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한글 음운 표기 일람표를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 모음은 ‘단모음, 중모음, 비모음, 반모음’ 순으로 제시하고, 자음은 ‘파열음, 마찰음, 유음, 파찰음, 비음’ 순으로 제시하였다.

3장의 표기 세칙도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7)

국제 음성 기호	한글 표기	보기		
		영·미어	독일어	프랑스어
l	ㄹ	Longfellow [lɔŋˈfɛləʊ] 롱펠로우	Laut [laʊt] 라우트	Louis [lwi] 루이
	ㄹㄹ	cleaning [kliːniŋ] 클리닝	Kleist [klaist] 클라이스트	classe [kla:s] 끌라스
	ㄹㄹ	film [fɪlm] 필름	Hitler [hitləɹ] 히틀러르(히틀러)*	
r	ㄹ	race [reis] 레이스	kreis [krais] 크라이스	rouge [ru:ʒ] 루지, 루즈(관용)
		green [gri:n] 그린		

[비고] 독일어의 [ɛɹ]가 말음에 올 때는 “어”로 적을 수 있다.

(17)과 같이 국제음성기호에 따른 한글 표기와 영·미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따른 보기를 제시하였다. 모음은 2장과 마찬가지로 ‘1. 단모음, 2. 중모음, 3. 비모음, 4. 반모음’ 순으로 제시하였으나, 자음은 ‘1. 파열음, 2. 마찰음, 3. 비음, 4. 유음, 5. 파찰음’ 순으로 제시하였다. 모음에서는 음성적 특징이 유사한 여러 개의 국제음성기호를 묶어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한글 표기로 나타낸 반면, 자음에서는 (16)의 유음이나 마찰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나의 국제음성기호에 대응하는 하나의 한글 표기를 제시하였다.

2. 「외래어 표기법(1986)」으로의 반영

「한글 표기법(1969)」은 비록 공포되어 실시되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1986년 1월에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공포한 「외래어 표기법(1986)」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상당수 내용이 반영된다. 「외래어 표기법(1986)」은 ‘1. 표기의 기본 원칙, 2. 표기 일람표, 3. 표기 세칙, 4. 인명, 지명의 표기 원칙’의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의 표기의 기본 원칙은 새로 신설한 4항 외에는 「한글 표기법(1969)」의 2항을 제외한 각 항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였다. 또 2장에서 국제 음성 기호에 따른 한글의 표기 일람표나 3장에서 조음방법에 따른 표기 세칙이 제시된 것 역시 「한글 표기법(1969)」의 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글 표기법(1969)」에서 살피볼 수 없었던 ‘인명, 지명의 표기 원칙’이 4장에 새로 제시된 것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대체로 「한글 표기법(1969)」을 따름을 알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1986)」의 2장은 국제 음성 기호, 일본어 가나 문자, 중국어 한어 병음 및 기타 16개 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한글 표기법(1969)」의 2장 영·독·프랑스어의 음운 표기 일람표와 비교하면 (18)과 같다.

(18)을 보면, 「외래어 표기법(1986)」의 2장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는 「한글 표기법(1969)」의 2장 영·독·프랑스어의 음운 표기 일람표에서 모음과 자음의 제시 순서를 바꾸어 합쳐놓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외래어 표기법(1986)」의 2장은 「한글 표기법(1969)」의 2장과 달리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뒤에 각 나라별 자모와

한글 표기법(1969)			외래어 표기법(1986)						
모음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구분	I.P.S	한글 표기	자음		반모음		모음		
단	i	} 이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모	i:								
음	ɪ								
...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자음			p	ㅍ	ㅂ, 프	j	이*	i	이
파	b	ㅂ	b	브	ㅍ	위	y	y	위
열	t	ㅌ	t	트	w	오, 우*	e	e	에
음	d	ㄷ	d	드			ø	ø	외
...

[비고] [p] [t] [k]는 ㅍ, ㄷ, ㄱ로 적는다.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표기 세칙에 따른다.
**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는다.

한글 대조표가 추가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제시하는 방식은 [표1]을 기본으로 '보기'만 덧붙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틀은 동일하다. (17)을 살펴보면, 「한글 표기법(1969)」에서 [비고]에 제시된 된소리가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 거센소리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파열음 표기의 내용적인 면 역시 동일하다. 물론 「한글 표기법(1969)」의 2장이 영·독·프랑스어에 제시된 음운 표기를 제시한 데 비해, 「외래어 표기법(1986)」의 2장은 국제 음성 기호에만 나타난 음운에 대한 표기를 제시하는 등의 차이는 있지만, 표기 세칙에서 특정 음운에 대한 한글 표기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글 표기법(1969)」의 3장 표기 세칙이 표로 제시된 것과 달리, 「외래어 표기법(1986)」의 3장 표기 세칙은 줄글로 제시되어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한글 표기법(1969)」의 3장 표기 세칙이 영·미어, 독일어, 프랑스어만 다룬 것에 비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네덜

란드어 등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래어 표기법(1986)」 3장의 제1절 영어의 표기를 「한글 표기법(1969)」 3장 표기 세칙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음의 표기에서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한글 표기법(1969)」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이는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도 수용하였다. 중모음에서는 「한글 표기법(1969)」에 없던 [au]를 ‘아워’로 적는 내용이 「외래어 표기법(1986)」에 새로 생겼고, 「한글 표기법(1969)」에서는 ‘오우’로 읽던 [ou]가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는 ‘오’로 읽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 적는 것으로 동일하였다. 또 「한글 표기법(1969)」에 있던 비모음 표기 규정이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복합어 규정이 새로 나타난다. 반모음에서는 「한글 표기법(1969)」에 있던 [ɰ]가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는 사라졌으며, 「한글 표기법(1969)」에서 ‘보기’로 제시한 것과 달리,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는 해당 반모음의 표기 규정을 3개 조항으로 명시하여 진술하였다.

자음 표기에서는 「한글 표기법(1969)」에서 ‘(1) 말음이 될 때, (2) 유음 앞에서, (3) 유음 이외의 자음 앞에서’로 구분하여 표기 규정을 제시한 것과 달리, 「외래어 표기법(1986)」은 ‘제1항 무성 파열음([p], [t], [k]),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으로 나누고, 제1항을 다시 ‘1. 짧은 모음 다음의 무성 파열음,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3. 위 경우 이외의 무성 파열음’으로 제시하고, 제2항은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으로 제시하였다. 「한글 표기법(1969)」의 ‘(2) 유음 앞에서’ “파열 자음이 유음 [l], [r] 앞에 있을 적에는 모음 “으”를 넣어 적는다”라고 명시한 규정이 「외래어 표기법(1986)」의 ‘제1항 무성 파열음([p], [t], [k])에서 “2.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으로 나타나는 등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파열음 표기 규정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외래어 표기법(1986)」의 ‘제3항 마찰음([s], [z], [ʃ], [v], [θ], [ʝ]’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ʃ], [v], [θ], [ʝ]는 ‘으’를 붙여 적는다”는 표기 규정은 「한글 표기법(1969)」의 마찰음의 표기와 관련된 (1), (2)항의 내용을 합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1986)」의 ‘제3항

마찰음([s], [z], [ʃ], [v], [θ], [ð])의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시’로 적는다”는 규정은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 외에 「외래어 표기법(1986)」의 제1절 영어의 표기 중 자음의 표기에서 ‘제4항 파찰음([ts], [dz], [tʃ], [d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즈’으로 적는다”는 표기 규정과 ‘제6항 유음(III)’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이 덧붙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글 표기법(1969)」의 내용과 동일하다. 단지, 「한글 표기법(1969)」에서는 표로만 제시된 비음과 관련된 표기 규정이 「외래어 표기법(1986)」 ‘제5항 비음([m], [n], [ŋ])’에서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와 “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는 규정으로 진술된 것이 차이를 보인다.

정리하면 「외래어 표기법(1986)」은 세부적인 규정이 삭제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한글 표기법(1969)」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음의 표기 중 「한글 표기법(1969)」에서 ‘오우’로 읽던 [ou]가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 ‘오’로 읽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나, 자음의 표기 중 파찰음의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즈’으로 적는다”는 규정을 통해 「외래어 표기법(1986)」이 「한글 표기법(1969)」보다 국음화한 외래어 표기를 더 많이 수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들온말(1948)」, 「한글화 표기법(1958)」, 「한글 표기법(1969)」을 중심으로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 변천 과정과 수용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한글의 음성 기호로 쓰려는 시도(임흥빈, 1996)’라 여겨졌던 「들온말(1948)」에서부터 편수자료를 통해 인명, 지명 등의 세칙을 나라별로 마련한 「한글화 표기법(1958)」을 거쳐 오늘날 「외래어 표기법(1986)」의 토대가 되는 「한글 표기법(1969)」에 이르기까지 문교부 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원음(原音)에 충실한 표기에서 점차 국음화(國音化)한 표기로 변화해온 양상을 보였다. 이는 크게 '1. 장음 표기, 2. 된소리 금지, 3. 관용 표기 확대'라는 세 가지 현상을 통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글화 표기법(1958)」을 따르던 편수자료에서 '코리아이어'와 같이 장음 표기가 극대화된 것이 「한글 표기법(1969)」에 오면서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들은말(1948)」에서 외국 학자들의 음성학적 인식을 근거로 'Boston-뽕스뽕'과 같이 어두에 오는 파열음에 된소리를 표기하거나, 편수자료의 3호에 '따렌'과 같이 중국 주음부호의 한글 표기 원칙에 따라 평설음 외에 다른 자음에도 된소리를 표기한 것이 「외래어표기법(1986)」에 와서 사라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편수자료 1호에서 '어나운서'로 표기한 것이나 편수자료 2호에서 '사이곤'으로 표기한 것, 또 편수자료 4호에서 신해혁명 이전 시대 인물을 '다르마, 류샤오지'와 같이 표기한 것을 「외래어 표기법(1986)」에 의해 '아나운서, 사이공, 달마, 유소기'와 같이 표기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오늘날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데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즉, '외래어 표기'인지 '외국어의 한글 표기'인지에 대한 논쟁이나, 외국의 고유명사를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할 것이냐, 관용 발음을 최대한 수용한 국음 표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에 봉착하였을 때 문교부 외래어 표기법안의 변천 과정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편수자료 및 어문규범집

-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 용례집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제1차 -제19차)』. 국립국어연구원, 1997.
- 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국어연구소, 1986.
- 문교부 편수국, 『편수자료 제1호 -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방법 국정교과서 외래어 일람표』. 문교부, 1959a.
- _____, 『편수자료 제2호 - 외국지명 한글표기-』. 문교부, 1959b.
- _____, 『편수자료 제3호 - 한글맞춤법에 관하여.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한글 표기 세칙. 교과용 도서 체제 기준안. 중국 지명 한글 표기 원칙』. 문교부, 1960.
- _____, 『편수자료 제4호 - 사회과 인명, 지명 표기-』. 문교부, 1963.
- 문영주·서지영·함승연·서민철·옥현진·최숙기, 『교과서 편수자료 1: 편수 일반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1-6-2, 2011.

2. 논저

- 강희숙, 『국어 정서법의 이해(개정판)』. 역락, 2010.
- 구본관,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010.
- 김만곤, 「'편수관'이라는 이름」. 『敎科書研究』, 교과서연구재단, 2002.
- 김민수, 『國語政策論』.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 _____, 『歷代韓國文法大系 第3部 第13册 영인본』. 탑출판사, 1986.
- _____, 『現代語文政策論: 그 실태와 개선안』. 한국문화사, 2007.
- 김세중, 「외래어 표기의 변천과 실태」. 『새국어생활』 제23호, 1990, 112-130쪽.
- _____, 「외래어 표기의 문제점」. 『관훈저널』 제64호, 1997, 209-223쪽.
- 김수현, 『외래어 표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 박종덕,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제23호, 2007, 157-181쪽.
- 박창원·김수현,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제14권 2호, 2004, 59-102쪽.
- 유경숙,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목록상의 번자(飜字)표기문제」. 『논문집』 제9집 1호, 경성대학교, 1988, 151-173쪽.
- 이관규, 「어문 규범 정책의 전개와 과제」. 『광복 70돌맞이 말글 정책의 회고와 전망』, 한글학회, 2015.
- 이상규,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

- 학회, 2011, 135-181쪽.
- 이상억, 『국어 표기 4법 논의: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 이승구, 「표기 자료의 개발」. 『編修의 뒤안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 임동훈,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6, 41-61쪽.
- 임홍빈, 「외래어 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6, 3-40쪽.
- 신유식, 「개화기 외래어 표기법 연구」. 『언어학연구』 제4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00, 281-295쪽.
- 최현배, 『한글갈』. 정음사, 1940.
- _____, 『(고친)한글갈: 改正 正音學』. 정음사, 1961.
- 허윤희, 「외래어 표기의 실태 분석 연구: 외래어 표기법의 영어 표기 세칙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

(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외래어 표기법(1986) 제정 이전의 문교부 안과 편수자료를 중심으로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 변천 과정과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문교부의 첫 번째 외래어 표기법인 「들온말 적는법(1948)」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과 달랐는데, 한글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음성학적 인식을 근거로 제정하였다.

둘째,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은 문교부의 두 번째 외래어 표기법인데, 이에 대한 세칙이 편수자료로 발행되었다. 편수자료 1호에서는 ‘장모음의 장음을 표기한 것, 이중모음 [ou]를 ‘오우’로 표기한 것, 파열음이 말음일 때는 ‘으’를 붙여 적는 것’ 등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편수자료 2호에서는 외래어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 된소리도 지명 표기에 나타났다. 편수자료 3호에서는 중국 주음부호의 한글 표기 원칙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편수자료 4호에서는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한 인명 표기가 나타났다.

셋째, 문교부의 세 번째 표기법인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1969)」은 모음에서 이중모음 [ou]를 ‘오우’로 표기한 것과 자음에서 파찰음에 대한 규정 일부가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 수정되었다.

결국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은 원음(原音) 표기에서 관용 발음을 대폭 수용하는 국음(國音) 표기로 변화해왔다.

투고일 2015. 12. 18.

심사일 2016. 1. 21.

게재 확정일 2016. 2. 25.

주제어(keyword) 외래어 표기법(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편수자료(Editing Material), 들온말 적는 법(Deuronmal Jeongneun beop),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Romajajui Hangeulhwa pyogibeop),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Oeraeeoui Hangeul Pyogibeop)

The Transition Process and Acceptance of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by Ministry of Education: With Emphasis on the Earlier Draft Plans and Editing Materials of Ministry of Education before Enactment of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1986)

Lee, Gyeong-suk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arlier draft plans and Editing Materials of Ministry of Education before enactment of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1986), analyzing the transition process and acceptance of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by Ministry of Education.

The first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Deuronmal Jeongneun beop (1948)”) of Ministry education was different from the “Hangeul Matchumbeop Tongiran(1940)”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honetic recognition of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by foreign linguist.

It was followed by “Romajui Hangeulhwa pyogibeop(1958)” which is the second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of the Ministry Education, and the detailed rules for this orthography was issued as editing guide. In the 1st version of the above guide, working examples of prolonged sound of long vowel, noting diphthong [ou] as ‘오우’, adding ‘으 (eui)’ to explosive when final consonant. In the 2nd version of the editing guide, fortis that do not apply loan words were also included in the notation of location. In the 3rd version, the principles of how Chinese Bopomofo should be notated in Hangeul was explained, while in the 4th version, guide as to how to notate names of people as closest as possible to the Chinese original pronunciation.

Finally, writing diphthong [ou] as ‘오우’ and part of the regulation regarding consonant to affricate from the third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by Ministry of Education(“Oeraeoui Hangeul Pyogibeop 1969”) was amended in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1986)”

Overall,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developed from principally noting the original pronunciation to actively accommodating widely used pronunciation.